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“동계올림픽추진단”을 2014. 12. 31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
-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문화·관광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경제와 체육업무를 통합하여 경제체육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한시기구(동계올림픽추진단) 신설(안 제3조제2항제12호)
 - 3담당 10명 : 2014. 12. 31까지(올림픽 개최시 까지 연장계획)
- 나. 유사 연관 업무의 통합(안 제3조제2항제6호~제7호)
 - 문화관광과, 경제체육과 신설(문화체육과, 관광경제과 폐지)
- 다. 부서명칭 변경(안 제3조제2항 제2호, 제3호, 제11호)
 - 주민생활지원실 → 주민생활지원과
 - 민원봉사과 → 종합민원과
 - 도시건축과 → 도시주택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붙임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 예고 : 2012. 3. 23 ~ 3. 27(5일간),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.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실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체육과·관광경제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방재과·도시건축과를”을 “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관광과·경제체육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방재과·도시주택과·동계올림픽추진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민생활지원과

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합민원과

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건축관련 업무

마. 개발행위허가 관련업무

제3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문화관광과

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문화·예술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향토문화발굴”을 “향토문화 발굴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부터 마목

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.

라. 관광기획 및 홍보·행사 등에 관한 업무

마.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업무

제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제체육과

제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

나. 에너지 관련 업무

다.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

라.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

마. 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

제3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시주택과

제3조제2항제11호마목부터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주택 관련 업무

바.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

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동계올림픽추진단

가. 동계올림픽 추진계획 수립 및 기획·조정

나.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업무협조 및 지원

다.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및 대회지원

- 라. 대회경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
- 마. 올림픽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 지원
- 바. 올림픽연계 지역균형개발 사업 추진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관광경제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②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경제체육과장”으로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를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건설과장”를 “건설방재과장”으로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축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④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⑤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⑥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⑦ 평창군생활보호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3호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⑧ 평창군여성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⑨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⑩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종합민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⑪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⑫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⑬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를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⑭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관광경제과장”을 “경제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⑮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관광경제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하고 “도시건축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
⑯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⑰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실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”로 한다.

- ⑱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 중 “도시건축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- ⑲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 중 “도시건축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- ⑳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도시건축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- ㉑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3항 중 “도시건축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- ㉒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도시건축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<u>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실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체육과·관광경제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방재과·도시건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실·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주민생활지원실</u> 가. ~ 자. (생 략)</p> <p>3. <u>민원봉사과</u> 가. ~ 다. (생 략) 라. <u>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6. <u>문화체육과</u> 가. <u>문화예술에 관한 업무</u> 나. <u>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----- ----- <u>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관광과·경제체육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방재과·도시주택과·동계올림픽추진단을 -----.</u>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민생활지원과</u> 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종합민원과</u>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건축관련 업무</u> 마. <u>개발행위허가 관련업무</u>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문화관광과</u> 가. <u>문화·예술-----</u> 나. <u>향토문화 발굴 -----</u> -----</p>

다. (생략)

라.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

마.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

바. 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

7. 관광경제과

가. 관광 기획 및 홍보·행사 등에 관한 업무

나.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·허가 관련 업무

다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

라. 에너지 관련 업무

마.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

8. ~ 10. (생략)

11. 도시건축과

가. ~ 라. (생략)

마.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

바.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

<신설>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관광기획 및 홍보·행사 등에 관한 업무

마.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

<삭제>

7. 경제체육과

가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

나. 에너지 관련 업무

다.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

라.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

마. 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

8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도시주택과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주택 관련 업무

바.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

12. 동계올림픽추진단

가. 동계올림픽 추진계획 수립
및 기획·조정

나.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업무
협조 및 지원

다.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및 대
회지원

라. 대회경기시설 및 기반시설
설치 및 지원

마. 올림픽특구 지정 및 개발 사
업 지원

바. 올림픽연계 지역균형개발 사
업 추진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.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